

의안 번호	2480	<p>【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 <h1 style="text-align: center;">심사보고서</h1>
----------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0. 2.(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0. 2.(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0. 16.(목)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조례 구성을 일반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과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주민 및 관계자의 이해를 쉽게 하고 아이놀이뜰공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구성 개정(장으로 구분)
 - 제1장 총칙
 -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제2장 어린이공원 관리
 - 관리계획 수립, 행위제한, 안전점검 등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안 제4조 ~ 제10조)
 - 제3장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
 -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23조)

○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아이놀이뜰공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 “아이놀이뜰 시설”, “누리집”,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에 대한 용어 정의

○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규정(안 제11조)

○ 아이놀이뜰공원 이용 시간 등,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휴장일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제14조)

○ 아이놀이뜰공원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제17조)

○ 아이놀이뜰공원 사용권 양도 금지 등, 사용자 수칙,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 제20조)

○ 아이놀이뜰공원 손해배상 등, 사용자 유의사항 게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 제22조)

○ 아이놀이뜰공원 수입금 납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

○ 아이놀이뜰공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4조)

○ 별표 신설

- 별표 1.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제15조 관련)
- 별표 2. 사용료 감면 기준(제16조 관련)
- 별표 3. 사용료 반환 기준(제17조 관련)
- 별표 4. 시설 사용자 수칙(제19조 관련)

다. 근거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0조, 제4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순정)

- 본 개정조례안은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이 준공되고 아이놀이뜰 내에 있는 그물놀이시설이 유료로 이용됨에 따라 그물놀이시설의 이용시간, 예약방법, 사용료, 이용자 수칙, 위탁관리 등 그물놀이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40조에 공원시설 위탁관리,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안 제16조(사용료 감면) 별표2의 사용료 감면기준에서 100분의 30 경감 대상 중 다목 근거 법령인 제명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2025. 1. 13.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제명도 변경되었으므로 현 조례명으로 수정이 필요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사항

- 수정이유: 개정안 별표2의 사용료 감면기준에서 근거법령명 현행화
 - 100분의 30 경감 대상 중 다목 근거 법령인 제명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수정
- 수정안 대비표(별표2)

원 안 (개정안)	수 정 안
사용료 감면 기준(제16조 관련) 3. 100분의 30 경감 다.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사용료 감면 기준(제16조 관련) 3. 100분의 30 경감 다.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근 거 법 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

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

③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